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혼인윤리 성립과정고찰*

- 소안론과 배위량의 논쟁을 중심으로

오지석(송실대학교 HK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기독교 혼인윤리 논쟁

1. 근대전환기 한국인의 혼인문제
2. 내한 선교사들의 중혼자 논쟁

III. 나오는 말 ; 기독교 혼인윤리의 수용과 그 이후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11>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2018S1A6A3A01042723).

** 주저자, ojs612@naver.com

• ABSTRACT •

The Foundation of Christian Ethics of Marriage in Korean Modern Period - Focused on the Debate of William Baird and William L. Swallen

HK Prof., Oh, Jie-Seok(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clarifies the process by which missionaries resolve through debate and debate on the problem of the polygamist, which was one of the challenges faced by Korean missionaries in the early days as Christianity was accepted in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Christian family ethics, or marriage. Its purpose is to track the process by which ethics is being implanted and established. Traditionally, in Korean society, monogamy system existed in form, and constrictions were openly allowed. In the light of Christian doctrine, the custom of constrictions could not be allowed, but the issue of dealing with polygamist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theology among missionaries. In 1895, the Methodist Church organized that polygamist, regardless of gender, could not enter or enroll in the Methodist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began in 1894, and in 1897, it was establish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Mission, attended by Speer of the North Korean Presbyterian Mission.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W. L. Swallen is a moderate position on the self-serving of a member of the church of , and insists on the principle of principle. At the annual meeting in 1897, the position of William M. Baird who insisted on principle rather than the moderate theory of W. L. Swallen was accepted. This stance that a big man cannot become a member of the Church persists after that. The debate on the serious marriage between Swallen and Baird is the basis of the marriage ethics of Christianity in Korea,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Korean society has played a certain role in the transition from formal monogamy to practical monogamy.

Key words: Christian Ethics, Marriage, Modern Period, William Baird, William L. Swallen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세기 후반 쇄국과 개화 사이의 혼돈을 겪던 한국사회에 풍속 처럼 여겨진 형식상 일부일처제의 축첩, 중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서양 선교사들 특히 소안론과 배위량 사이의 혼인윤리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혼인은 인류지대사 가운데 하나로 여겼고, 개항 후 혼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소 방식이 필요했다. 근대전환기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일부일처제 형태 속의 축첩 관습은 내한 선교사들에게는 눈앞에 직면한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단순히 한국의 풍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개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당면한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서적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동시에 알게 모르게 유교적 전통을 받고 자라났고 그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혼인윤리도 그 안에서 같음과 다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1895년 내한 감리교 선교사들은 ‘중혼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감리교회에 입교·재적할 수 없다’고 정리한다. 이로써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혼자라면 중혼을 해소해야 하고, 중혼을 배격하는 금지론이 교회 안에 확립되어 갔다.¹⁾ 이에 비해 장로교 선교사들은 감리교와 달리 1894년부터 1897년까지 3년간 거쳐 중혼자에 대한 교회입장에 대한 만주의 ‘로스’방법과 산동의 ‘네비어스’의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토론과 논쟁을 속에서 두 방법이 상존하며 조율하는 기간이었다.²⁾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 소안

1)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역사』, 16(2002), 32.

2) 옥성득, 같은 글, 같은 쪽.

론(William L. Swallen, 1865~1954)과 배위량(William M. Baird, 1865~1954)의 논쟁이었다. 이 문제는 1897년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스피어가 한국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금지론을 결정하여 일단락 짓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혼인윤리가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한국인의 전통 혼인관과 초기 내한 선교사 소안론과 배위량 사이의 중혼자에 대한 논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수용한 기독교 혼인윤리의 흔적을 따라가 볼 것이다.

II. 한국 기독교 혼인윤리 논쟁

1. 근대전환기 한국인의 혼인문제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가 조우할 때 발생한 가장 예민한 문제는 조상제사와 중혼문제였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은 효(孝)와 경(敬)을 강조하는 가족윤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혼인윤리였다.³⁾ 『주역(周易)』 「서괘전(序卦傳)」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의 순서가 있는데 특히 사람관계에 있어서 “(전략)만물이 있는 후에 남여가 있고, 남여가 있는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 관계가 성립한 후에 임금과 신하가 있다(후략)”⁴⁾며 선후를 밝히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부부사이 관계라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는 인간이라면 네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친다고 한다. 이를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한다. 이 관혼상제가 중심이 된 가례(家禮)에서 중요한 것은 혼례라 하였다. 왜냐

3)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78.

4) 『周易』, 「序卦傳」, 右上篇,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

하면 혼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부부, 부자, 가족, 사회의 윤리가 모두 붕괴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에서 혼인의 가장 큰 목적은 ‘조상 제사를 받들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奉祭祀 繼後嗣)’⁵⁾이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대어 중혼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축첩풍속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혼금지는 고려시대 유처취처제(有妻聚妻制)를 규제하면서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대를 담은 윤리적 법적 장치였다. 조선에서 중혼이 금지 되었다고 곧 일부일처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혼금지로 첫째 부인만 ‘처’로 인정되고 그 외의 부인들은 모두 ‘첩’이 되었다.⁶⁾ 첩의 경우 처와 구별되어 더욱 차별받았다. 달리 말해 중혼첩의 존재가 용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은 엄밀한 의미의 일부일처제 사회는 아니었다.⁷⁾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대부가의 축첩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남녀유별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격리가 심화되었는데 이것은 남편의 축첩을 조장하였다. 즉 벼슬에 나가거나 외지로 장시간 떠날 경우 부부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로 하여금 시댁에 머무르면서 일하게 하고 임지에 있어서 첩을 준비하는 풍속이 만연하였다.⁸⁾

조선은 가족의 노동력 확보 및 성도덕을 엄격히 규정했던 유교윤리와 더불어 12~13세가 되면 부모의 뜻대로 혼인하여 엄격한 의례적 형식에 따라 생활을 강요했다. 또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독립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해갈 수 없었다.⁹⁾ 조혼은 부부에게 불화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축첩

5)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1), 185~188.

6)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2004), 13~16.

7) 이숙진·양현혜, “초기 기독교의 혼임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2010), 44.

8) 김두현,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8), 588~589.

9) 윤건차,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이명살심정보 옮김, (서울: 살림터, 2016), 31.

풍조와 함께 중혼자들을 양산해 내었고 상하귀천을 불문하고 주색에 빠져, 19세기 말 조선 가정 가운데 십중팔구는 부부의 불화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¹⁰⁾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이 시대에는 “중산층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한두 명의 첩을 두어 이중살림을 하는”¹¹⁾ 것이 다반사이고, 필부라도 으레 첩을 두는 게 일상 풍경이었다.¹²⁾ 축첩제가 묵인되었던 조선사회에서는 처와 첩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켜, 법제로 이어져 그 차별이 첩의 자자손손에까지 이어졌다.

개화기에 이르러 지식인들은 서구 열강 즉 문명개화한 나라에는 일부 일처의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가 정립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축첩풍속을 망국의 요인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일처의 부부관계가 유교적 윤리질서를 부인함과 동시에 서양의 부부윤리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던 『독립신문』조차 1897년 6월 10일 자 기사에서 흥만식 참판의 딸이 조동윤에게 시집갔으나 결혼한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삼촌의 죄로 말미암아 시집에서 쫓겨나 ‘홀로 혼서지를 품에 품고 밤낮으로 울며 여주 땅에서 목숨을 지탱’하니 조동윤 개인이 이 부인의 원통함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조동윤에게 명하여 이 부인을 도로 영접하여 별도로 부인을 삼게 하고 또 지금 있는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히 조씨는 부인을 둘 가지게 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일부일처제의 정립보다는 유교적 윤리의식의 수용을 우선시하는 당시의 윤리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¹³⁾ 다시 말하자면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의 입에서 야만의 풍속인 축첩 풍속

10) 『독립신문』, 1899년 7월 20일, 「논설」.

11) 다니엘 기포드, 『조선의 풍속과 선교』, 심현녀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3.

12) 『제국신문』, 1901년 1월 31일자.

13)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학회지』19(2), 2001, 12.

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이처 부부관계나 남편의 축첩은 인정될 수 있다는 소리다.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축첩제 담론은 축첩제를 암흑시대의 악습으로 규정하면서 첩과 첩을 들인 남성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목소리로 아내의 도리로서 유교적 부덕을 여전히 강조하는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근대지식인들은 축첩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⁴⁾ 근대전환기의 지식인들 시선에서는 조혼, 축첩은 전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축첩의 원인을 남존여비에서 찾아 성차별적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축첩의 문제가 가족이 ‘미개와 야만’상태로 머무르느냐, ‘문명개화’로 나가느냐를 가른다고 보았다.¹⁵⁾

2. 내한 선교사들의 조혼자 논쟁

가톨릭이 동아시아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한국인 스스로 신앙을 키워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벽과 권일신에게 영세를 주면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 가톨릭은 천주의 피조물인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회는 당시의 여성에게 부여된 차별적 대우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억혼, 과부개가금지와 함께 조혼·축첩제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신앙인들이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일상의 삶 안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¹⁶⁾ 예수회 선교사 뻬또히는 『칠극』 제6권 방음(坊淫)편 혼취정의(婚娶正議, 혼인의 바른 뜻)¹⁷⁾에서

14) 이숙잔·양현혜, “초기 기독교의 혼임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2010), 43.

15) 이숙잔·양현혜, 같은 글, 45.

16)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학회지』 19(2), 2001, 5~6.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며 축첩풍속에 반대하는 가톨릭의 혼인윤리를 제시한다.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첩을 둔 사람이 신사(神父)가 한번 분부하신 후에 고집하여 순명치 아니하면 공소 때에 연미사와 교우의 연도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¹⁸⁾ 남성의 중혼을 교회법으로 엄금하였다. 실제로 주문모 신부는 중혼자에게 성사(聖事)를 주지 않으면서¹⁹⁾ 교회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축첩생활을 계속 할 경우에는 신자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첩을 내보내는 일을 실천하였다. 근대전환기 한국 가톨릭의 혼인 윤리는 당시의 가족제도에서 보이는 모순들(억혼, 과부개가금지, 중혼)을 지적하고 있었다.

근대전환공간에서 한국 기독교는 수용초기부터 ‘혼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혼인윤리를 제시하고 기독교의 혼인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890년대 한국사회는 중혼이 만연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문명개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미신타파, 우상타파, 구습타파를 외치며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구습타파의 일환으로 지목된 것은 전통적인 혼인풍속과 혼인윤리였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교인들에게 조혼, 억혼, 중혼을 금지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며 정죄하거나 출교조치를 취했다. 중혼(자)은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혼인 상태’, 혹은 ‘일부

17) 뽀또하(龐迪我), 『七克』, 박유리 옮김, (서울: 일조각, 2005), 366~367.

“제가 태어났던 지역의 모든 나라의 풍속은 그 어느 곳이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짝을 짓는 것을 바른 법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지어비는 다만 한 사람의 지어미만을 짝으로 맞이하는데, 감히 이를 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어미가 죽으면 다시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을 뿐, 첩은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18) 백규삼, “백주교의 사목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순교자와 증거자들』(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출판부, 1982), 313

19) 달레, 『한국천주교사연구』 상권, 안응렬 외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9), 417~418.

다처를 지속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옥성득은 이들 행위자에 대한 논쟁을 '일부다처제논쟁'²⁰⁾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 이상규는 제도에 관한 논쟁이 아니므로 '중혼자 논쟁', 혹은 '축첩제 논쟁'으로 부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주장한다.²¹⁾ 왜냐하면 당대 중혼자들은 일부다처제에서 중혼한 것이 아니라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중혼한 것이었고,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중혼자(취첩자)를 교회가 세례를 주고, 교회의 회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혼자 처리의 문제는 감리교보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여러 해 동안 다루었다. 선교사들은 중혼의 해악을 인정하고 입교 이후에 다 처자나 첩이 되는 것은 금지했으나, 교인이 되기 전에 관습대로 처첩을 두었던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처첩들을 그대로 두게 할 것인가를 논쟁하였다.²²⁾ 한 명 이외의 여자들을 보내야 한다면 그들과 아이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었다.

1888년 런던선교대회에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중혼금지의 입장이었고, 중국과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은 관용적 태도를 취했다. 왜냐하면 선교지역의 사회상황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리교회의 올링거나 아펜젤러 등은 완전 금지론자였다. 금지론자들은 중혼자나 첩에 대한 세례와 입교를 금한다는 입장이며 중혼자가 세례를 받으려면 첩을 내보내고 본처와 살아야 하며, 첩인 여자는 첩살이를 중단하고 그 집에서 나와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감리교회의 경우 1895년 8월 30일 서울 배재학당에서 연례회의가 열렸는데 이 때 처리의 문제로 토론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0)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16), 2002, 2

21) 이상규, “교회는 중혼자(重婚者)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서신학』, 2(2019), 16

22)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16.

23) 옥성득, 같은 책, 같은 면.

존스 형제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혼관계 있는 이의 학습인 자격을 박탈한다는 안은 우리 교회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고, 중혼 관계에 있는 남자나 여자는 북감리교에 입교하거나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연례회의의 판단이다.²⁴⁾

초기 내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중혼자 수용여부에 대해 관용, 중도, 금지 등의 입장을 표현했다. 중혼자 문제는 기보(D. L. Giffort)가 1894년 12월 북장로교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제기하면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기보는 1892년 6월 한국학의 보고인 *The Korean Repository* 한국의 조상제사 관행에 대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는 중혼자 문제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제기되는 불가피한 현실로 보아 관용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의 생각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유교는 남자들에게 두 번째 부인이나 첩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두 명의 첩을 두어 본처와 같은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 집을 마련하여 이중살림을 한다. 남편은 자신이 거느린 2명의 아내를 대할 때, 불쌍한 본처는 존경심으로, 후처는 사랑으로 대한다. 결혼 풍습은 여자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데, 바로 과부의 재혼을 금하는 법이다. 젊은 과부는 비록 재혼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본처가 되어 힘든 생활을 책임지기보다는 첩이 되는 경우가 많다.²⁵⁾

관용론자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의 풍습에 따라 첩을 얻었으므로, 첩과 첩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첩을 내보내지 않아도 세례를 줄 수

24) 이상규, 앞의 글, 18에서 재인용.

25) 다니엘 기포드, 『조선의 풍속과 선교』 *Every Day Life in Korea, A Collection of Studies and Stories*, 심현녀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3

있다. 다만 교인이 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첩을 둘 수 없다. 첩의 경우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나, 교인이 된 자가 새로 첩으로 들어갈 수 없다. 중도론자는 중혼자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는 허용하되, 집사나 장로 등 교회 직분은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주의 로스와 매킨타이어, 산동의 네이어스, 코버트, 상하이의 허드슨 테일러와 디모시 리차드, 닝포의 맥카티, 수초우의 드보스 등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노련한 선교사들은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만주에서는 관용론이나 중도론으로 가려고 했다.²⁶⁾ 1895~1897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중혼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중혼금지 : 원두우(H. G. Underwood, 뉴브런즈윅, 1885, 서울), 마포삼열(S.A. Moffett, 맥코믹, 1890, 평양), 이길함(G. Lee, 맥코믹, 1890, 평양), 배위량(W. M. Baird, 맥코믹, 1891, 부산/평양), 안의와(J.E. Adams, 맥코믹, 1895, 부산/대구)

중혼중도 : 기일(J. G. Gale, 토론토대학, 1888, 원산/서울), 어부신(O.R. Avison, 토론토대학 1892, 서울), 민노아(F. S. Miller, 뉴욕 유니언, 1892, 서울)

중혼관용 : 기보(D. L. Gifford, 맥코믹, 1888, 서울), 빈돈(C. C. Vinton, 1891, 서울), 모삼열(S. F. Moore, 맥코믹, 1892, 서울), 소안론(W. L. Swallen, 맥코믹, 1892, 원산/평양)

기보가 제기한 중혼자 문제는 북장로교 연례회의에서 장로교공의회로 넘겨 토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원두우와 평양의 마포삼열은 다른 사안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게 많았지만 중혼자의

26)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16~518.

세례금지에 대해서는 강한 금지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중혼자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배위량과 그의 처남 안의와도 같은 입장이었다. 중혼을 허용할 수 없으나 중혼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가 이들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중도파²⁷⁾로 구분되는 데 기일, 어부신, 민노아 선교사다. 관용파로 분류되는 선교사는 기보, 빈돈, 모삼열, 소안론 등이었다. 중혼자를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금지, 중도, 관용으로 나왔는데 이 분포를 들여다 보면 출신 신학교나 내한 연도의 오래됨과 상관없이, 서울에서는 언더우드를 제외하면 중도파·관용파가 많았고, 평양과 부산에서는 금지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선교사 원두우와 마포삼열이 금지 입장을 고수하자 기보와 같은 중혼 관용자의 입지가 좁아졌다.²⁸⁾ 또한 중혼자 문제에 대한 장로교 선교사들의 견해가 금지와 관용자로 반반으로 갈라졌고, 공의회에서 조차 최종 결정을 미루자 *The Korean Repository*의 편집자이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존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장로교 선교사들이 감리교와 같이 완전 금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⁹⁾

1896년 8월에 열린 장로교공의회는 “과거 중혼자였던 자나 첩을 두고 있던 사람이 입교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의견이 다시 양분되었다. 당시의 분위기를 원두우 부인(Lilias H. Underwood)은 *The Korean Repository* 3권 1896년 12월호에 기고한 “The Woman’s Work

27) 옥성득은 “중도파의 주장은 아마도 중혼자의 입교는 허락할 수 있으나, 안수 직분(목사나 장로)과 전도자 직분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듯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16), 2002.2. 18.)

28)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19.

29)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16), 2002.2.

17.

in the Far East”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혼 문제”는 “괴물처럼 어려운 문제”로서, 유죄 판결이나 입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쉽고 간결한 해결 쪽으로 유혹을 받지만, 교회의 장래와 교회 밖의 불쌍한 여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켜야 할 분명한 의무는 중혼제를 확고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선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³⁰⁾

교회가 중혼자를 수용할 것인가? 달리 말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중혼에 관련된 내한 선교사들에게 던져진 물음은 “개종 전에 첩을 가진 남성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종신 학습교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장로교공회회 연례회의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관용론과 금지론이 대립한다. 당시 선교사들의 담론의 장이었던 *The Korean Repository*에서 미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소안론과 배위량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소안론과 배위량은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동문 사이이고, 각각 원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후에 평양에서 같이 활동하며 문서사역도 활발히 하였다. 당시 교회가 직면한 중혼문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추적해 보자.

1) 소안론의 관용론

이 논쟁은 소안론이 1895년 8월 *The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중혼과 교회(Polygamy and the Church)”라는 글과 배위량은 소안론의 관용

30) “Notes and Comments”, *The Korean Repository* 3:12(Dec, 1896). 502.

론에 반대하는 글을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7, 8, 9월호에 “기독교회는 중혼자들을 받아들일 것인가?”(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라는 제목으로 기고하면서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로 나아간다.

소안론은 관용론자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관용론자였다. 처음에는 중도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관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신자가 되기 전 중혼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산에서 활동하다 평양으로 임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소안론은 1895년 8월 *The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중혼과 교회 (Polygamy and the Church)”³¹⁾라는 글을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적인 토대 위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면, 한국교회는 현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중혼(polygamy)문제이고, 둘째는 조상제사(ancestral worship)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내년(1886년) 10월에 개최될 ‘장로교공의회’ 연례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져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 이 주제가 금년 가을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는 이 주제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지만 현재 한국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첫 걸음을 떼려한다. 그 첫 단계로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지식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여러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한다.³²⁾

위의 글에서 소안론 자신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왜 이 글을 게재하

31) 이 부분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 제 14집에 “자료번역: 윌리엄 스왈런(W. L. Swallen) / 이상규역 ‘중혼과 교회’(161~178)를 저본으로 삼았다.”

32) W. L. Swallen, “Polygamy and the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2:8(1895.8), 289.

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의 예상과 같이 연례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으나 역시 연례회의에서도 결정내리지 못해 장로교공의회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었다.

소안론은 위의 글에서 한국보다 오랜 선교 역사를 가진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의 선교현장에서 부딪힌 중혼문제를 다룬 다양한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자신이 관용적인 입장에 서게 된 이유를 밝힌다. 그는 우선 중혼문제에 대해 다섯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대교회에서 노예제도가 용인되었듯이 일부다처제가 용인되고 있었다는 주장.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독교인의 생활방식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초대교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개종전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한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 되었다.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이상의 부인이나 첩을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신앙에 만족스런 증거를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둘째, 첫째 입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회에는 중혼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대하여 디모테전서 3장 2절과 12절, 디도서 1장 6절을 인용한다. 따라서 교회는 중혼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중혼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모든 악이 교회로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수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옹호하는 하는 자들의 주장은 “중혼자들은 세례받을 수 없고 학습인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면서 세례언약을 깨뜨릴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때인 임종 시에 세례받기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셋째, 일부다처를 인정하는 이교도와의 결혼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 그 남자는 부인 한명을 제외한 모든 아내를 포기하거나 모든 아내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달리 말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전 아내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하던지 선택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넷째, 첫째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인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부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

다섯째, 같이 살아야할 아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인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반드시 아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중혼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의 아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33)

소안론은 계속해서 중혼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놀랐다고 하며 성경에 입각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다섯 가지로 표현하고 정리한다.

(1) 한 남자는 한 아내를, 한 여인은 한 남편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 창조 때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한 사람의 아내를 취했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5-6절, 마가복음 10장 7-8절,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2) 중혼자 즉, 두 사람 이상의 아내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 디도서 1장 6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3) 중혼자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파문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혼을 지지하지 않으셨지만 중혼자를 허용하였던 증거가 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엘가나, 사

33) Ibid., 289-290.

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두 명이상의 아내와 첩을 취했다. 우리의 약속된 구세주께서 오셨던 계보를 이어오게 하였다(마1:6).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면, 그 옛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룸에 있어서 얼마나 관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처리 하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윗을 막는 이유가 여러 아내와 첩을 두었기 때문이라면 약속된 씨가 된 것은 무엇인가?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던가? 그것은 분명히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셨고 중혼은 용납되었다.

(4) 하나님께서 성경에 중혼을 내쫓아야 할 죄로 정하고, 중혼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예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갈 5:19-21)는 구절에서 말하는 ‘그런 죄’ 가운데 중혼자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혼자가 천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그럴 수 없고, 성경에서 언급한 바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권위로 성스러운 의식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가?

(5)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분명하게 중혼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없지만 교회 회원권마저 거부될 수는 없다. 또한 특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 교회에는 한 사람 이상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오직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하기에, 금지 명령은 일반 교인 자격의 조건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오직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이것은 중혼의 권리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없다.³⁴⁾

소안론은 일부일처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지만 신자가 되기 전 또는 개종하기 전 중혼자라고 해서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다면 교회 회원권마저 거부될 수 없고, 단지 교회 직분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4) Ibid., 291-294.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회심하기 전 중혼자로서 살아온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혼자라 할지라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했다면 우리는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거나 교회의 거룩한 의식(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 중혼자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내나 첩을 버리라고 강제할 수 없다. 나는 교회 내에서 일부다처제를 용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 관계를 이어온 사람을 쫓아 낼 수 없으며 이제 와서 그러한 관계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혼인이란 영구성이 있어서 일단 혼인으로 맺어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단절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중혼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나 첩을 버리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중혼이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일이 발행한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기독교회가 그 동안 중혼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교회 내에서 중혼은 어둠의 나무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빛 가운데서 결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⁵⁾

달리 말하면 소안론이 개종한 중혼자에게 세례와 성찬(거룩한 의식)의 참여를 금하라고 한 말이나, 오랜 기간 살아온 아내들과의 강제로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없고 이들은 입교는 가능하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고, 교인이 된 후에 새로운 부인이나 첩을 얻는 행위를

35) Ibid., 293-294.

금지해야 하며,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소안론의 관용론은 당시 한국의 사회 현실을 고려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³⁶⁾, 첩을 둔 이들에게도 세례는 주되, 교회의 직분은 허락하지 말자는 주장인데, 이는 중도파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중혼논쟁의 불을 지핀 후 소안론은 1895년 9월 25일 선교본부의 엘린 우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여기서도 소안론의 중혼에 대한 관용론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선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개종 전에 첩을 두었던 이들이라도 진정으로 개종하였다면 다른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선교 명령에서 배척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우리 형제들 일부는, 첫 번째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인들을 모두 내보낸 자라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입교시킨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를 지지하는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구절들을 인용하지만, 그 결론들은 나름대로 도출한 것입니다.³⁷⁾

2) 배위량의 중혼금지론

배위량은 소안론의 관용론이 발표되고 시간이 지난 뒤 1896년 10월 있을 장로교공의회를 앞두고 7, 8, 9월 세 번에 걸쳐 *The Korean Repository*에 “기독교회는 중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라는 주제로 글을 투고한다. 이 글들은

36) 이상규, Ibid., 24.

37) W. L. Swallen to F.F. Ellinwood, Sept. 25, 1895. *Letter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배위량이 소안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 글들을 투고한 이유를 2가지로 들고 있다. 그 하나는 소안론의 중혼자 입교지지의 입장을 논박하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1896년 10월 장로교공의회에서 중혼자의 입교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중혼자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교회 직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관용론자들의 중혼자의 입교 찬성에 반대를 주장하며, 장로교공의회에서 중혼 금지론을 펼치기 위해 긴 글을 쓴 것이다.

배위량은 1896년 7월 *The Korean Repository* “기독교회는 중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글을 투고하면서 중혼 혹은 중혼자 논쟁의 귀착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유지하는 남자들 혹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텐데, 후자의 경우에서 세례를 청한 여성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아내들이나 첩들과 성관계를 유지하는 남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³⁸⁾ 이것에 천착하여 세 가지 측면 성경적 고찰(성경구절)과 선교회들과 여러 교단들의 결정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지침, 한국의 관습 등을 검토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배위량은 이 글에서 성경적 원리와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안론 등이 주축이 된 관용론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배위량은 신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관용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논박한다. 그 출발은 “구약과 신약 모두 똑같이 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38)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1”, *The Korean Repository* 3:7(July, 896.), 194.

윌리엄 베어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상규역,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2(2019), 350.

이상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또 그는 구약의 주요인물들(아담, 셋,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은 에덴에서 받은 결혼 패턴을 평생 지켜야 할 도덕으로 수용하며, 지켜서 후대에 따라야 할 전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⁹⁾ 그는 “구약에는 중혼을 금지한 명시적 명령이 없다는 관용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구약교회에서 중혼자가 배제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논의와 무관하다”며 우리가 중혼이나 축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계명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옳던지 그르던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 여기에는 도덕과 결부된 측면이 있다. 중혼이 옳다면 우리 모두 그대로 행하고 권면해야 한다. 중혼이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상숭배인가? 불경죄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불공경,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만일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탐낸다면 탐심에 해당하지만, 이미 여러 여자를 삼은 경우, 어떤 계명을 어긴 죄일까?”⁴⁰⁾

배위량은 중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제7계명에 중혼을 금지한 가장 주된 구약의 계명이라 믿고, 구약과 신약에서 음행과 간통 등을 금한 모든 금지 명령들 또한 중혼을 반대한다고 믿는다.”⁴¹⁾ 이런 배위량의 생각은 다음처럼 요약될 수 있다.

중혼은 처음부터 있어 것이 아니고 후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고상하게 살았던 구약의 삶의 형태나 구약의 인문들과 배치된 것이다.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권장되지도 않았고, 7계명에 의해 금지된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구약에서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허용되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구약의 가르침

39)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350-351.

40)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355.

41)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356.

으로 볼 때 유대사회에서 배격된 것이었다. 중혼은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 헬라인, 사도들이 중혼을 다루었거나 초대교회가 그것을 허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중혼은 결혼의 기본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혼은 육적이고 세상적이어서 교회와 개인의 최상의 이익을 해치는 개념이다.⁴²⁾

배위량은 신약 교회의 정신은 세상에서의 구별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안론의 관용론이 일관적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 위에 있으려 한다고 논박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버리지 않은 대중들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1차 반박을 끝낸다.

배위량은 1896년 8월 *The Korean Repository* “기독교회는 중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제2부에서 ‘중혼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논지를 끌고 간다. 그는 소수가 중혼자들에 대한 교회 권위자들의 입장이 다양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회가 중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교회는 언제나 확고한 일부일처를 옹호하고 중혼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용인되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일부일처제를 강하게 주장했다⁴³⁾고 글을 시작합니다. 교회사에서 언급되는 주전 325년 이전 저작으로 추정되는 『사도적 헌법』(*Apostolic Constitutions*)에서 “영세 예비자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여종이라면, 그 관계를 청산하고 법대로 결혼하게 하고”, “첩이 해방된 노예라면, 합법적으로 그녀와 결혼하게 하되,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의

42)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365.

43)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2”, *The Korean Repository* 3:8(Aug, 1896.), 235.

윌리엄 베어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상규역,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2020), 207.

영세 신청을 기각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224번 설교에서 “누구든지 처와 첩을 거느린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평신도가 처와 첩을 둔 경우 출교한다.”등을 언급한다. 중세에도 이런 전통은 이어졌으며, 개신교에서도 축첩을 부도덕하게 보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이런 전통을 영국교회선교회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하며, 중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은 두 명 이상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 소유하고 유지하는 행위도 다 금한다고 이야기 한다. 세례는 그 의식의 모든 면에서 중혼자들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고백, 즉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공개적인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시 선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1) 중혼자 배제 찬성, 매우 많음, (2) 중혼자 허입 찬성, 매우 많음, (3) 중도 혹은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이들, 곧 불쌍한 둘째 부인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너무 냉대하지 말자는 소망을 표현한 자들, 매우 많음⁴⁴⁾

배위량은 세 번째 입장에 대해 충분히 수용하나 중혼자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인도 선교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소개하며 중혼 금지의 입장을 단단히 전개한다. 그러면서 찰스 하지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²부를 맺는다.

혼인의 본질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가 두 몸, 두 신부, 두 교회를 갖는 것이 전혀 어울리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중혼은 결혼의 본질을 훼손한다. 중혼은 여자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견해에 근거한 것이며, 여자를 거짓되고

44) 윌리엄 베어드, 위의 글, 211.

모멸스러운 위치에 두는 것으로 여자를 본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권리를 훼손하고 수많은 악을 낳는 것이다. ... 만일 이방인들의 나라에 기독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교리뿐 아니라 기독교의 도덕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세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겠다고 고백한다. 그들에게 잘못된 증거를 들고 용인하라고 허락해서는 안 된다. ... 사도시대 교회가 중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후 어느 시대에서도 중혼이 용인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다.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 일부가 예외일 수 있지만 중혼을 그리스도의 뜻에 배치된다고 여겼고,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회도 중혼을 용인하지 않았는데 만일 지금 이 19세기에,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즉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모든 시대 성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중혼자들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⁴⁵⁾

배위량은 1896년 9월 *The Korean Repository* “기독교회는 중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제3부에서 ‘한국의 관습과 난제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중혼 금지론을 맺는다. 배위량은 이제 한국인의 관습을 살펴보면서 중혼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배위량은 “한국의 축첩 문제는 인도나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복잡하지 않고 중혼자들이 실제로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중혼과 축첩이 자유롭게 용인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도덕 기준에서도 둘 다 잘못되었다고 지탄받는다. ... 중혼자의 교회 허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이며, 중혼자들뿐 아니라 첩들과의 죄악된 관계를 지속하는 자들도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국의 최고 관습에서도 정죄하는 일이다.”⁴⁶⁾

45)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213-214.

라며 중혼 중도관용론자들을 애들러 비판하고 있다. 베어드는 한국에서의 양성관계, 축첩 등에 대한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본처(The Real Wife), 두 번째 부인(A second Wife), 가직이(House-Keepers), 첩들(concubines)이 있다고 한다. 축첩을 용인하며 발생 빈도는 매우 드물지만 중혼도 용인하는 한국의 관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한다고 평가한다.⁴⁷⁾ 또한 한국관습은 중혼자들과 축첩자들에게 세례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요구 및 교회 권위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평한다.⁴⁸⁾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한다.

1. 중혼과 축첩은 기독교교회에서 관용될 수 없다.
2. 오직 한 아내만 있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3. 본처는 없고 다른 여자들과 동거하는 세례 청원자는 세례 받기 전에 복혼 관계를 다 정리하고 이 중 한 여자와 정식으로 혼인해야 한다.
4. 두 아내를 둔 자는 두 번째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전까지 세례 받을 수 없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양심에 맡긴다. 교회는 바른 가르침을 줄 책임이 있다.
5. 세례를 받으려면 모든 첩은 버려야 한다. 각 첩과의 정리는 분리하여 처리하되, 인내와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는 그 첩이 다른 후원을 얻기까지 별거하면서 후원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그 여인을 처라고 부르면 안 된다. 곧 '지금 네 옆에 있으나 네 것이 아닌(요한복음 4:18)' 아내라고 볼 수 있다.
6. 아버지

46)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3", *The Korean Repository* 3:9(Sept, 1896.), 260.

윌리엄 베어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상규역,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2020), 215.

47) 배위량은 감리교 선교사 조지 H. 존스(rev. Geroge H. Jones)가 1896년 6월 *The Korean Repository* 에 기고한 글 "The Status of Woman in Korea"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리한다. "결혼은, 때로 쌍방 사이에 사적인 동거 맹세를 하기도 하지만, 통상으 나별 예식 없이 그냥 함께 살자고 상호 합의한 관계이다. 첫째 아내는 유일한 합법적인 아내이고 한국인은 그 면에서 철저한 일부일처주의자이다."라고 정리한다.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221.)

48)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216-221.

는 자신의 친자식을 후원하고 세심하게 훈련할 책임이 있다. 7. 중혼자의 아내이지만 믿는 여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한 남편’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불신자이면, 여자의 뜻대로 행하기 어렵다. 8. 과거에는 동거자였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간통 금지에 따라 갈라선 자들은 더 이상 구속력 있는 사이라 볼 수 없으나, 이해 당사자 한 편의 증거만 들어서는 안 된다. 9. 이상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세례 청원자는 학습자 반에 남아서 그들이 양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⁴⁹⁾

배위량은 위의 아홉 가지 행동지침을 세운 이유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교회의 순전함을 지킬 유일한 길이다”⁵⁰⁾고 설명한다. 이것은 중혼자가 중혼관계를 청산하기 이전까지는 세례를 베풀거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화한 것이며, 자신의 이 논문이 장로교공의회 및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맺는다.

*The Korean Repository*의 편집자인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존스는 배위량이 마지막 글을 기고할 때 그의 분명한 성경 해석과 한국관습에 공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중혼자의 완전 금지론을 적극 지지하고, 장로교공의회가 같은 방향으로 결정으로 기대했다.⁵¹⁾

배위량은 중혼 금지파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1896년 북감리회 한국 선교부는 중혼의 문제를 강경하게 처리하면서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다. 여러 사업에서 협력하던 감리교의 공동 정책 요청은 장로교로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1896년 팽팽하던 공의회의 입장은 10월 관용파인 기보가 건강악화로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고, 북장로교나 캐나다 장로교 보

49)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229~230.

50) 윌리엄 베어드, 같은 글, 230.

51) “Polygamist in the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3:9(Sept, 1896). 374-375.

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도덕률로 무장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내한하면서 금지론은 더욱 강화되었다. 1897년부터 장로교 선교사들은 금지론 쪽으로 기울어져갔다. 3년 여 끌어오던 이 문제는 1897년 8월 열린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 연례회의를 통해 일단락지어진다.

중혼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금지파인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로버트 스피어(R. E. Speer)와 그랜트(William H. Grant)가 1897년 8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장로교 선교회 연례회의와 장로교공의회를 앞당겨 개최하였다. 여기서 스피어는 자신의 입장과 미국교회가 1875년 장로교 헌법에서 중혼자(일부다처제)의 입교 금지한 것을 전달하였다. 동아시아의 중혼(처첩제)과 미국의 일부다처제는 달랐으나 ‘polygamy’로 이 두 개념을 이해한 미국교회의 입장은 아직 한국장로교가 미국장로교회에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 선교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⁵²⁾ 이 과정에서 베어드가 세 번에 걸쳐 발표한 글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상규는 이를 장로교공의회가 베어드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한다.⁵³⁾

III. 나오는 말: 기독교 혼인윤리의 수용과 그 이후

이숙진의 표현처럼 기독교 혼인윤리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교회는 전통 혼례풍속에 대한 단절과 교인들을 통제라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혼인윤리를 한국인 교인들에게 이식하고, 수용하도록 했다.⁵⁴⁾ 그리고 선교사들이 중혼(축첩)에 대한 단절을 요구한 기독교 혼인윤리는 수용에 있어서

52)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19.

53) 이상규, “교회는 중혼자(重婚者)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서신학』, 2, 2019.12., 34.

54)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49.

중혼자로서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서상륜의 회원권 정지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만주의 ‘로스 방법’과 산동의 ‘네비어스 방법’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중혼을 대하는 방법 사이의 상이한 정책을 조율기간의 흔적이다.

1895년 소안론에 의해 시작된 중혼논쟁에 1896년 배위량이 참여하면서 완전 금지, 중도, 관용을 표방한 입장들이 금지와 관용의 진영으로 다시 완전 금지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논쟁을 단순히 선교사들 사이에 서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The Korean Repository* 를 통해 전개한 것은 한국에서의 담론이 그저 한국 지식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국가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소안론과 배위량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해외저술은 물론이고 인도, 중국, 촘촘한 선교 망을 바탕으로 지역/국가의 경계를 서신을 통해 넘나들며 구축했기 때문이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중혼자의 교회 회원 가입에 대한 완전금지의 입장에는 배위량의 입장이 영향을 끼쳤다. 1897년의 중혼 금지가 결정되고 이를 서상륜에게도 적용하는 회원권 정지 결정,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교인들은 항의했고, 서상륜에 대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선교사들에게 요청했다. 1898년 소집된 회의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서상륜을 전교사로 복직시켰다. 하지만 중혼자의 교회 회원 유입 금지라는 결정이 번복된 것은 아니다. 1897년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 중혼자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널리 지지 받았고, 교회는 이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중혼의 엄격한 금지는 선교사들이 한국기독교인에게 단절과 통제라는 방법으로 혼인윤리를 이식한 것이다.

1903년 연례회의에서 한국인 목회자들은 중혼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

다. 여기에는 이기풍, 길선주, 방기창, 김필수 등이 참여하였다. 장로교공의회에서는 ‘혼인관계위원회’를 통해 혼인 규칙을 1년 더 연구하도록 했다. 그 결과 1904년에 중혼의 완전 금지, 간음이외의 사유로 이혼금지, 불신자와 결혼 금지, 정혼(약혼)에 주의를 요함. 모든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오랫동안 교인 자격을 정지시키든지, 원입인으로 남겨둔다는 5개항의 규칙을 마련하여 통과시켰다.⁵⁵⁾ 1907년 중혼문제는 금지론으로 정리를 한다. 이것은 기독교 혼인윤리가 종교적 메타포를 이용해 서구 근대의 혼인윤리를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킨 결과이다.⁵⁶⁾

근대전환기에 한국의 다양한 기독교 매체는 그 시대 계몽을 주장하는 다른 언론 매체처럼 새로운 윤리를 다루었다. 특히 기독교계 매체들(「조선크리스도인회보」, 「신학월보」, 「그리스도신문」, 「그리스도회보」, 「기독교신보」, 「가정잡지」 등)은 새로운 혼인윤리로 기독교 혼인윤리에 대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다룬 혼인윤리의 주제는 조혼을 금하고, 축첩(중혼)의 문제에서는 엄격했고, 교인 사이의 혼인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외래사상이 이식과 수용 그리고 변용과 확장을 통해 자리 잡게 된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근대전환기에 형성된 중혼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혼인 윤리의 수용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혼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적 기준과 동떨어지지 않은 결정을 한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근대전환기 선교사들은 한국사회에서 일부일처제를 존중하고 축첩을 용인하고 아주 드물게 중혼 상태를 받아주더라도 중혼자 처리문제에 있어서 세계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췄다. 이것이 누군가

55)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16), 2002.2. 30.

56) 이숙진·양선혜, “초기 기독교의 혼임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2호(2010년 3월 25일)), 46.

의 표현대로 한국사회에 건설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른 원리가 되었다고 하여도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그것은 한국전쟁이 70년이 넘어 간 이즘에 분단, 전쟁 그리고 긴 시간의 휴전으로 발생한 중혼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윤리적 물음과 해결 노력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1.
- 김두현,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8.
- Daniel Lyman Gifford, *Every Day Life in Korea, A Collection of Studies and Stories*, 심현녀 옮김, 『조선의 풍속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달레, 『한국천주교사연구』 상권, 안응렬 외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9.
- 백규삼, “백주교의 사목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순교자와 증거자들』,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출판부, 1982.
- 바노니, 『바노니의 아동교육론』, 김기성 옮김, 성남: 북코리아, 2015
- 뽀또하, 『칠극』, 박유리 역, 서울: 일조각, 1998.
-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2 (2006), 75-96.
- 육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16(2002). 7-34.
- 육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윌리엄 베어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상규역, 『한국기독교문화 연구』 12(2019), 349-387.
- 윌리엄 베어드, “중혼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상규역, 『한국기독교문화 연구』 13(2020), 207-261.
- 육영수, 「서양 선교사와 19세기 후반 한국학의 (재)발명」,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0 제1차 학술대회 ‘선교사와 한국학’ 대회보』, (2021.1.27.), 67-107.
- 윤건차,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이명실·심성보 옮김, 서울: 살림터, 2016.
- 이상규, “교회는 중혼자(重婚者)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서신학』, 2(2019), 11-39.
-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 (2014), 345-375.

- 이숙진·양현혜, “초기 기독교의 혼입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32(2010), 35-62.
-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학회지』19(2), 2001, 67-82.
-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65(2004), 6-40.
-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1”, *The Korean Repository* 3:7(July, 1896.)
-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2”, *The Korean Repository* 3:8(Aug, 1896.)
-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Part 3”, *The Korean Repository* 3:9(Sept, 1896.)
- “Notes and Comments”, *The Korean Repository* 3:12(Dec, 1896)
- W. L. Swallen, “Polygamy and the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2:8(1895,8)
- W. L. Swallen to F.F. Ellinwood, Sept. 25, 1895. *Letter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 『독립신문』, 1899년 7월 20일. 「논설」.
- 『제국신문』, 1901년 1월 31일자.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8일

심사게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06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근대전환기 한국에서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겪는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중혼자 혹은 복혼자(polygamist) 문제에 대해 선교사들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밝혀 기독교 가정윤리, 혹은 혼인윤리가 이식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부일처제도는 형식상 존재하였으며 공공연히 축첩이 허용되었다. 기독교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축첩풍습은 허용될 수 없었지만 중혼자 처리 문제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신학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1895년 감리교에서는 중혼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감리교회에 입교·재적할 수 없다고 정리하였고 장로교에서는 1894년부터 시작해 1897년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스피어가 참석한 한국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일단락을 지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안론은 중혼자의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 온건한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 배위량은 원칙론을 주장한다. 1897년 연례회의에서는 소안론이 주장한 온건론보다는 원칙론을 주장한 배위량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중혼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은 그 후에도 유지된다. 소안론과 배위량의 중혼자관련 논쟁은 한국 기독교의 혼인윤리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형식적 일부일처제에서 실질적 일부일처제로 이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기독교윤리, 혼인, 근대전환기, 배위량, 소안론
